

#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988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 II.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굴착공사에 수반되는 도로의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음
- 당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대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규모 증가가 필요함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의결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표 2-1〉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 주요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변동율
계	42,396,565	57,400,565	15,004,000	35.39%
도로시설물 관리	30,138,593	45,138,593	15,000,000	49.8%
기타	1,000	5,000	4,000	400%
재무활동	12,256,972	12,256,972	-	-

- 도로시설물관리(도로굴착복구공사) : 2019년 하반기 노후 상수도관 긴급정비 등에 따른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 증가 및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증가(150억원)

※ 증가 세부내역 : 도로굴착복구공사비 부족 상반기 27.8%

하반기 72.2%(붉은 수돗물 취약관로 개선 52.2%, 전기, 난방, 하수, 도로교통시설 등 20%)

- 기타(사무관리비)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의수당, 도로복구품질 향상 관련 서적 구입비, 전문가 자문비 등 증가(400만원)

〈표 2-2〉 대차대조표

(단위 : 천원)

구분	수입			구분	지출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운용 규모	42,396,565	57,400,565	15,004,000	운용 규모	42,396,565	57,400,565	15,004,000	
합계	27,906,000	42,910,000	15,004,000	합계	30,139,593	45,143,593	15,004,000	
원인자부담금 (222-02)	27,651,000	42,655,000	15,004,000	도로굴착복구공사	계	29,784,000	44,784,000	15,000,000
이차수입 (216-01)	245,000	245,000	-		소계	28,278,000	43,278,000	15,000,000
기타수입 (224-06)	10,000	10,000	-		직접복구	25,278,000	40,278,000	15,000,000
					사후정비	3,000,000	3,000,000	-
					감독업무비 (401-02)	1,500,000	1,500,000	-
					시설부대비 (401-03)	6,000	6,000	-
				계	354,593	354,593	-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관리(201-02)	202,593	202,593	-
					전면개편 ISP용역 (207-02) 전산개발비	152,000	152,000	-
				사무관리비 (201-01)	1,000	5,000	4,000	
예치금 (714-01) (천년도 이월액)	14,490,565	14,490,565	-	예치금 (602-01) (다음년도 이월액)	12,256,972	12,256,972	-	

〈표 2-3〉 최근 5년간 기금(시설비) 집행내역

회계연도	지출계획액(원)	지출액(원)	집행율(%)
2014	23,340,000,000	22,405,635,320	96.00
2015	25,730,200,000	23,270,136,465	90.44
2016	24,519,000,000	23,018,694,370	93.88
2017	25,349,532,000	23,477,759,800	92.62
2018	29,926,000,000	29,511,949,360	98.62

###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sup>1)</sup>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정책사업인 **도로시설물 관리**의 지출금액을 지난 6월 개최된 제2차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301억 3,800만원)보다 150억원 증액된 451억 3,8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지출계획이 49.7% 증가되고
- **행정운영경비**를 현행 100만원 보다 40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지출계획 하는 것으로서 정책사업의 지출계획이 400% 증가되어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서울시와 우리 시의회는 '19년 6월, 문래동 일대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제287회 정례회중 2019년도 제 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노후 상수도관을 조기 교체하고자 727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의결한 바 있음<sup>2)</sup>

○ 추경예산 의결에 따라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작업과정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굴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공사후 굴착된 도로를 다시 복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바

- 「도로법」 제91조<sup>3)</sup>는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으며,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sup>4)</sup>에 따라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4조<sup>5)</sup>는

2) 서울시 잔여 노후상수도관 138km 중

■ 정비중 (상반기 시행공사) : 76km (1,062억원, '19년도 본예산 편성)

■ 추가정비 (하반기 시행예정) : 62km (727억원, '19년도 추경예산 편성)

3)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5)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동 기금의 재원을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정하고 있음

〈표 3-1〉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지출 계획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수입계획 >				< 지출계획 >			
목	2차변경 (A)	3차변경 (B)	증·감 (B-A)	정책사업	2차변경 (C)	3차변경 (D)	증·감 (D-C)
합 계	42,396	57,400	15,004	합 계	42,396	57,400	15,004
일반부담금 (원인자부담금)	27,651	42,655	15,004	도로시설물 관 리	30,138	45,138	15,000
공공예금 이자수입	245	245	-	행정운영 경 비	1	5	4
그외수입	10	10	-	재무활동	12,256	12,256	-
예치금회수	14,490	14,490	-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된 노후 상수도 관 교체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을 반영하고자 동 기금의 수입계획중 **일반부담금**을 150억 400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 지출계획의 경우에도 수입계획이 증가된 만큼 정책사업인 **도로시설물 관리**의 지출계획을 150억원 증액변경하고, **행정운영경비**의 지출계획을 400만원 증액변경하여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사후정비공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도로시설물 관리**의 경우, ‘붉은 수돗물’ 사태 등으로 인한 상수도관 교체공사로 발생한 78억 2,800만원을 포함한 도로굴착복구공사 직접복구비 108억 2,800만원과 상반기 도로굴착 복구공사비 부족분 41억 7,200만원이 반영된 150억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인 바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 지출계획 변경한 **도로시설물 관리** (150억원)의 경우,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도로굴착에 대한 신속한 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도로굴착복구공사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수당 등에 지출하고자 **행정운영경비**를 400만원 증액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5조<sup>6)</sup>는 동 기금의 용도를 “도로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정하고 있어 지출계획 변경을 통한 기금 지출의 조례상 근거를 확보한 사안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붉은 수돗물’ 사태 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추경을 통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 비용을 추가로 편성함에 따라 증가되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물량에 대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지출계획도 증액 변경하려는 것인 바,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의 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6)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